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5 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김경만·홍성국·강선우

서영석・양정숙・김홍걸

박홍근 • 신정훈 • 이성만

이병훈 · 남인순 · 김민철

정청래 · 박완주 · 강병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&D 비중이 2% 이상이고, 직전연도 R&D 비중이 10% 이상이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.

이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,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2%로 조정하며,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25조의5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"을 "2023년"으로, "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"을 "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"으로,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12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다만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5조의5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제25조의5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제) ① -----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 -----2023년-----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분의 5(대통령령으로 정하 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(제2 -----<u>100</u>분의 12----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 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 액을 말하며,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)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 <단서 신설>

1.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 세연도(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 세연도로 한다)의 수입금액 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)에서 연 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고,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 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2.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<삭 제>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 니할 것. 다만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

----. 다만,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 용한다.

<삭 제>

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